

민주연구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은 9월 21일(월),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의 여덟 번째 브리핑으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송창욱 부원장은 “그동안 DMZ 설치 근거와 출입, 관리에 관한 종합적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비무장지대 출입·승인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유엔사 간 이견이 제기되면서 DMZ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DMZ법 관련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이재강·한정애·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DMZ 법률안의 병합 대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사전 조율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법 조항 중 ‘관계기관 사전협의’ 표현 등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전협정 준수를 명문화’해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프레임에 대한 법리적 명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DMZ 출입·승인 체계를 군사적·비군사적 사안으로 이원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정전협정 서문의 “이 조항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purely military in character)”에 근거할 때, 유엔사의 통제권은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엔사의 허가권을 군사적 사안은 신청-허가(실질심사), 비군사적 사안은 신고-수리(형식심사)로 나누고, 단계적 추진방안으로 ‘포괄적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유엔사와의 실질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유엔사 규정 개정’ 요구를 병행 추진한다. 한미안보협의회(SCM) 산하 ‘DMZ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DMZ 출입불허 사유를 공개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유엔사 규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 넷째,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 및 명확한 국제법적 논거에 입각한 정부의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 ‘동맹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한미 양국은 DMZ 관할 문제에 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바, 공개 설전을 통한 불필요한 논란보다 사전 협의를 통해 실용외교에 부합하는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민주연구원 김은옥 수석연구위원은 “DMZ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적 가치 보전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긴장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유엔사 간 협의 채널을 재정비하고 법적 공백상태에 있던 유엔사와의 협조문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끝/